##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7

발의연월일: 2020. 9. 23.

발 의 자:이병훈·양경숙·장철민

홍성국 • 김용민 • 김남국

정청래 · 장경태 · 주철현

김승원 · 신정훈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 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	1
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	
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	
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u>,</u>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
	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
	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
	하는 행위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